

붙임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 개요

□ 지원 대상

○ 아래와 같은 사유로 **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**를 사용한 근로자

-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,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및 휴업·휴원·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, 격일(주) 등원·등교·통원,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(원)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②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)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(擬似)환자,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코로나19 관련 등교, 등원,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,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(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)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□ 지원 내용

- 지원기간 ※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0일(한부모 25일) 사용 가능
 - (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) **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** 지원(맞벌이 부부 합산 30일, 150만원), **한부모 근로자*인 경우는 20일** 이내 지원
 - 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
 - (대규모 기업·공공기관 근로자) **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** 지원 (맞벌이 부부 합산 20일, 100만원)
- 지원금액 : **1일 5만원**
 - ※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(단, 4시간 이하는 2.5만 원 정액 지원)
- 예 산 : **1,092억원**(목적예비비 529억 + 4차 추경 563억)
- 신청 및 지급 :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→ 지급
 - *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(연속 사용한 경우 마지막 사용일)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- 적 용
 - 국내 첫 **코로나19 확진 판정(20.1.20.) 이후**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
 -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**9월 9일(고시일) 이후** 사용·지원

붙임2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안내 포스터



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가 부족하시나요?

“가족돌봄비용 **5일 더** 지원합니다.”

가족돌봄휴가도 **10일 더** 사용하세요!

- | | |
|--|---|
| <p>지원대상
9월 9일 ~ 12월 31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
<small>* 대규모·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나, 연장된 1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</small></p> | <p>신청방법
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, 9월 28일부터 신청
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www.moel.go.kr)
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송부</p> |
| <p>지원금액
일 5만원, 최대 5일 (한부모근로자 최대 10일)</p> | <p>신청기한
가족돌봄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
<small>* 분할사용시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</small></p> |

» 지원대상이 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«

만 8세 이하,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어린이집 휴원, 온라인수업, 학교휴교 등으로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

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)이 감염병환자, 감염병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



※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고용노동부

가족돌봄휴가

10일더 사용하세요

근로자 1인당	Before 10일	→	After 20일
한부모 근로자	10일	→	25일

▶ 더 알아보기

Q1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?

사용한 일수 중에서

근로자 1인당



+5일 × 5만원
25만원

*기준:연장 총 지원금 75만원

한부모 근로자



+10일 × 5만원
50만원

*기준: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

Q2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나요?

요건이 있어요.

① 기간은?



9.9~12.31.
코로나19 사유로 사용

다기입공공기관 근로자는 연장된 휴가는 사용 O, 비공공기관은 X

② 대상은?



중소기업 근로자
(우선지원대상기업)

Q3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?

예를 들어보면

어린이집 휴원,
학교휴교 등 *온라인수업 포함



만 8세 이하,
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
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

*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가족이 감염병환자,
감염병 의사환자 등



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
간접돌봄이 필요한 경우

Q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?

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**9.28일부터**



온라인 신청 은
고용노동부 홈페이지
*www.moel.go.kr

우편 신청 은
관할고용센터로 서류 송부

*기준: 10월에 대한 가족돌봄비용은
원래도 신청 가능

Q5 이미 비용지원을 받았는데 추가지원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
3가지 서류 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가족돌봄비용
신청서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
www.moel.go.kr



가족돌봄휴가
확인서

회사 측에 요청



코로나19 관련
증명서류

휴교휴업 증명서류,
감염병의사환자
증명서류 등

한부모 근로자의 경우, 한부모 근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(기준에 제출한 경우 제외)

Q6 맞벌이 부부인데 한 사람이 40일 사용할 순 없나요?

각자 사용 해야 합니다.

사용일수 20일	사용일수 20일
지원금액 100만원	지원금액 100만원
엄마	아빠

Q7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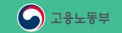
가족돌봄 휴가 **사용일 이후**



휴가 종료일로부터
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*분할 사용 시 각 휴가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

**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
코로나19 위기를
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**



붙임4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

1.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며칠인가요?

- '20.9.9자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10일(한부모의 경우 15일)입니다.
- 다만, 연장된 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은 이와 다릅니다.

2.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은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.
-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 대상은 아니나, 연장된 10일의 휴가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?

-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('20.9.9) 이후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('20.12.31.)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

4.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
- 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5.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?

- 9.28.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6. 고시(9.9)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15일 사용하였는데, 비용지원을 못 받은 5일분에 대해 연장된 돌봄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?

-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고시일(9.9) 이후 사용이 가능하므로, 고시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(연장된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아님)

7. 대규모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의 경우, 모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?

- 연장된 10일(한부모 15일)의 가족돌봄휴가는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대규모 기업 또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대상은 아닙니다(기존 10일은 지원)

붙임5**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(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)****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**

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)

산업분류	분류기호	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
1. 제조업[다만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34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]	C	500명 이하
2. 광업	B	300명 이하
3. 건설업	F	
4. 운수 및 창고업	H	
5. 정보통신업	J	
6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[다만, 부동산 이외 임대업(76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]	N	
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200명 이하
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9. 도매 및 소매업	G	
1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11. 금융 및 보험업	K	100명 이하
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13. 그 밖의 업종		

비고: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